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2. 8.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8월 8일
- 회부일자 : 2002년 8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2. 8. 22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적재조사 및 과적차량검문소 운영 등 현업부서 정원 6명을 증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2002. 6. 10, 대통령령 제17624호)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462명 ⇒ 2,468명(6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1,406명 ⇒ 1,412명(6명 증원)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60명 (변동없음)
 -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 (변동없음)

-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8명에 대해서는 2003. 2. 28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부칙)명시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행정수요의 증가와 과적차량 단속업무의 증가에 따른 정원 6명(지적재조사 2명, 과적차량 검문소 4명)이 승인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 7. 31까지 그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7624호) 개정으로 2003. 2. 28까지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